

# 중대재해기업처벌법

## 허수아비 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참여로 안전한 일터를 만듭시다!



###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은?

- 1 **사고사망뿐만 아니라 과로사, 직업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!**  
※ 중대재해 기준: 사망자 1명 이상, 동일 사고 부상자 2명 이상(6개월이 상치료), 직업성 질병자 3명이상(1년 이내 발생)
- 2 **업종 구분 없이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전 사업장이 대상!**  
- 제조업, 건설업 뿐만 아니라 사무, 학교, 공공기관 등 5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에 적용
- 3 **하청·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두 해당, 원청이 처벌 대상!**  
- 하청이 5인 미만이어도, 원청이 5인 이상이라면 적용
- 4 **세월호 참사,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도 적용!**

###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?

- 1.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
- 2.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
- 3.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선하라 요구한 것을 이행
- 4.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# 노동자 참여로 안전한 일터 쟁취!

**예방사업에 노동자 참여와 활동보장을 요구합시다!**

- 재해예방 계획 수립에 노동조합과 공동 논의  
(산업안전보건위원회, 건설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요구)
- 위험성평가, 작업환경측정, 원·하청 합동 점검 등 노동조합 참여 보장 강화
-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작업지침 전면 검토  
(위험작업에 따른 2인1조 등 적정 인력, 예산 요구)
-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활동시간 및 권리 보장  
(명예산업안전감독관, 안전보건지킴이 등)

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 
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, 예산 등을 요구하고  
노동조합은 중대재해 예방과 발생 시  
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!

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